

충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

[제정 2013.2.22.]

제1차 개정 2015. 4.20.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(이하 “규정” 이라 한다)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경영학과(이하 “학과”라고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论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논문제출자격)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제4조(논문제출자격시험)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
- ① 석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3과목으로 실시한다.
- ②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4과목으로 실시한다.
- ③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세부전공에서 정한 교과목으로 한다.
- ④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.
- ⑤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다시 재응시 할 수 있다.
- ⑥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5조(외국어능력 기준) 외국어능력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-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.
 1. TEPS 476점 이상
 2. TOEIC 600점 이상
 3. TOEFL(CBT) 163점 이상
 4. TOEFL(iBT) 57점 이상
 5.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
-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6조(논문 계획 및 예비 발표) 본 학과는 매학기 공개발표 및 본심사시에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
제7조(학술지게재 의무조건) 박사학위과정은 별표1과 각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- ①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. (적어도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한다.)
- ②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최근 10개 학기의 실적만 인정한다.

제8조(논문지도위원회) 박사과정은 논문신청 한 학기 전에 논문지도위원을 구성하도록 한다.

제9조(예외) 대학원 경영학과 기술경영전공, 경영학전공 학생에 대해서는 제5조의 외국어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. (개정 2015.4.20.)

제10조(시행세칙의 개정)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5.4.20.)

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학술지게재 기준

학술지 종류	학술지 종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종류 : 국내전문학술지 이상- 논문 게재 편수 : 1편 이상- 인정저자 : 주저자 및 교신저자	국내전문학술지(미등재)라 함은 3년 이상의 전문학술지 간행 실적을 가진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단체가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학술지로서, 국내전문학술지(등재 또는 등재후보)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함.